

조세에 대한 일부중요의 신문서와 법규 업데이트

2019年10月





Content

이런 뉴스중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에게 다음 같은 조세에 대한 일부중요의
신문서와 법규들을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각종 예방
항목들을
만드는
통지서
제48/2019/T
T-BTC 호;



전자영수증
상에 서명의
일, 시는
필수적 기준
인지?



이사할때엔
외국근무자에
게
로동허가서를
다시 발급
신청해야 한다;



지정처럼
제자리에 생산-
수출 하는
상품은 수입
원자재 의
면세를 받다;



수출품,
가공상품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기준을
세관의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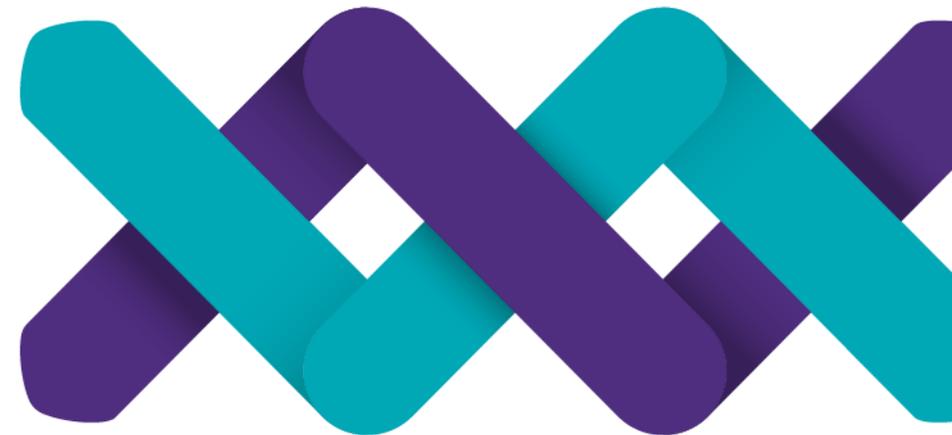


2017재정년도의
의정제20호의
규정에 따른
EBITDA 의
20%초과 기준의
Loans 의
이자비용에 대한
처리

1. 각종 예방 항목들을 만드는 통지서 제48/2019/TT-BTC 호

제정부는 최근에 통지서 제48/2019/TT-BTC 호(“통지48”)를 2019/08/08일에 발급해서 재고품의 감가, 각종투자 손실, 불량채권회수의 곤란기업에 상품, 물건, 서비스및 건축 항목등에 대한 보증을 위한 예방차입금 각 항목의 작성 과 처리내용을 안내해준다. 신 통지서는 발효시간이 2019/10/10일부터이고 2019의 제정년도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각종 예방금은 다음해의 보고기에 생길수 있는 손해를 년도 법인소득세 부담의 계산할때 공제 비용으로 계산되어서 기업의 재고품과 각 투자의 가치 반영을 시장가격보다 높지않고 년도 재정보고 작성시점에 회수 가능된 가치보다 각 채권 회수 가치도 높지않는 보장을 해준다.



1. 각종 예방 항목들을 만드는 통지서 제48/2019/TT-BTC 호

통지48호중 일부 새로운 항목들은 전에 예방작성보다 다음 같이 관련된다:

기업은 외국에 투자하는 항목에 대한 리스크예방을 만들어낼수 없다. 외국에 투자하는 항목에 대한 리스크예방 잔금 (있으면)을 꼭 환납하고 2019년 재정보고 작성시에 비용감소로 기록해야 한다..

각종 예방금의 작성과 환납은 전의 규정처럼 년중 회계만기 혹은 재정년도 말일이다. 그러나 그규정내용을 통치48호에 변경했고 시간목표는 년도 재정 보고 작성 할때에 진행한다.

재고품의 감가예방인 경우에 기업은 창고외에 있는상품까지의포함 예, 도착중 의 물건, 위탁 판매품, 세관창고의 보관물건등 이다.

그외에 그전에 비해 증권감가 예방과 재정투자실수의 예방 계산공식도 변경이 있다.

2. 전자영수증상에 서명의 일, 시는 필수적 기준 인지?

2019/06/11일에 하노이 세국은 ,세무총국에 문서 제 44743/CT-TTHT호 를 올려서 전자영수증상에 서명의 일, 시는 필수적 기준 인지를 지적안내 를 부탁한다. 그문세에 의하면 전자영수증상에 서명의 일, 시는 필수적 기준은 통지서 제32/2011/ TT-BTC 호의 6조과 의령서 제119/2018/ND-CP호의 6조에 따라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기업은 전자영수증을 서명 일,시표시를 없이 작성했고 각 필수기준들을 보장되었으면 그런 전자영수들을 규정 적합이라고 볼수 있다. 기업은 전자영수를 사용하는 공급자 에서 서명 일,시들이 없지만 법규합격 영수증들을 받았은 경우에 제정부의 2015/02 /27일 통지서 제26/2015/TT-BTC 호의 10항 1조규정들을 아직 적합되면 VAT공제를 받을수 있다 .

그렇지만 그 문제관연에 대해 일부 지방 세무국은 거구로 관점이 있어서 예, Bắc Ninh 성 세국의 2019/ 06/17일의 문서처럼 서명 일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

의령서 제 119/2018/ND-CP호의 안내를 위한 통지서의 Dript본에의 하면 전자영수를 작성하는 시점은 전자서명시점으로 본다. 때문에 안내 통지의 발급될때에 전자서명 시점이 필수적요구로 된다. 현재 그 런문제에 대한 세총국의 정식적 대답 문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각 세무서에 서로 다른 처리들이 있어서 각기업들은 진행하기 전에 조심이 필요하다.

3. 이사할때엔 외국근무자에게 로동허가서를 다시 발급 신청해야 한다;

2019/07/16일에 사회보후-로동부의 업무국운 최근에
문서 제 646/CVL-QLLD 호를 발급해서 외국
로동자에게 로동허가서 발급조건을 안내 해준다.
그에 의하면 외국인은 다른 고용자에 와서 같은
직업으로 근무하는 경우엔 비록, 그 로동자가 로동
허가보유 하고 유효시간 있어도 로동허가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런 일을 발급된 허가서는
오직 근무 신청 기업 범위내에만 사용 가치가 있다고
이해할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런경우에 재발급
신청서류들은 의령서 [11/2016/ND-CP](#) 호의 제10조
1,5,6항의 규정과 발급된 로동허가를 포함한다.



4. 지정처럼 제자리에 생산-수출 하는 상품은 수입 원자재 의 면세를 받다;

최근에 세관 총국은 문서 제4138/TCHQ-TXN호를 2019 /06/25일에 발급해서 외국의 지정처럼 제자리에 생산-수출 하는 상품은 수입 원자재 의 세금정책을 안내해 준다.. 이런문서에 의하면 기업은 수출품의 원자재수입을 했고 생신후와 가공상품 을 지정된 외국 상인에게 납품해주지만 외국상인이 베트남국내의 다른 외국 상인에게 납품지정 (제자리 수출 형식)을 받아하면 제자리 수출용 가공, 생산상품의 수입 원자재 에 대한 수입면세를 받다. 지정된 제자리 수출품생산안내에 관련하면 그전에 세관총국은 문서 제 5826/TCHQ-TXNK호를 발급했다..

그 따라 그 문서의 2점엔 제자리수출상품은 베트남기업에서 외국상인에게 생산해주고 국내의납품을 지정되면 원료수입의 면, 환세를 받을수없다고 한다. 새로 발급의 문서4138/TCHQ-TXNK호는 그전의 2018/10/05일의 문서 제 5826/TCHQ-TXNK 호의 내용을 대신으로 집행해준다.





5. 수출품, 가공상품의 생산을 위한 원자제기준을 세관의 검사;

2019/06/03일에 세관총국은 문서 제3600/TCHQ-KTSTQ 호로 수출, 가공상품의 생산 기준을 등록신고된 대상으로의 기업의 실제기준과 재고결재시점의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이런 문서에 의하면 세관총국은 각 시,성에게 안내를 해줘 구체적 수출, 가공상품생산의 실제 기준을 안내해준다. 수출, 가공상품의 생산기준을 집행할때 생산기준을 검사하기위한 생산평균기준에 근거하지않고 그렇게 하면 기업의 실제 생산과 불정확 결과를 가져온다. 그대신으로 실제기준을 검사하는 작업은 실제기준을 정하는 서류,증빙등 관련data의 근거상에 검사해야한다, 즉 매생산상품 Lot의 생산발령, 계획, 내부거래표, 증빙 등이다. 통관후검사 후 통관신청의 본사 검사를 할때 세관측은 기업이 보관의 관련서류,증빙들을 요구해서 매주,월,년에 따른 생산계획의 생산항목, 관리규모,특성따라 비교로 검사할수 있다..

5. 수출품, 가공상품의 생산을 위한 원자제기준을 세관의 검사;

같은 문서중에 세관총국도 창고검사시간을 안내해서 통관후, 사찰의 진행을 할수 있다. 그이따라 창고검사시점은 매경우에 따라 하고 매기업의재고품 관리실제와 근거 한다..신고검사와 통계 서류,증빙들을 충분 보관되면 검사시간은 기업의 통계검사와 같이 재고검사를 받는다.

거구로, 정기적 검사를 하지않는 기업 (혹검사과정중 서류공급을 하지 않으면) 의 경우에 세관기관은 통관후 기한내 실제 재고품검사를 하고 매기업의 정보수집결과, 재고품의관리 특성과 리스크에 근거해서 재고검사시간을 정해준다.

6. 2017재정년도의 의정제20호의 규정에 따른 EBITDA의 20%초과 기준의 Loans의 이자비용에 대한 처리;

세무총국은 최근에 문서 제 3000/TCT-DNL 호로 2019/08/01일에 Hà Nội 세국 한테 연결거래의 발생 각기업의 차입금이자 비용에 대한 의령서 제20/2017/ NĐ-CP호의 적용을 답변해준다. 다음 같다:



2017/5/1일부터 재정년도 말까지 발생한 차입이자비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2017/5/1일의 전,후에 차입 계약서의서명을 구분치않다.



납세자는 2017/5/1일부터 재정년도 말기까지 영업결과의 다로 책킹, 결재하면 “ 영업활동의 총 순이익의 합: 차입이자, 기중 감가상각비용” 의 계산 각 기준들은 실제 발생 정보에 따라 정한다.



납세자는 2017/5/1일부터 재정년도 말기까지 영업결과의 다로 책킹, 결재를 할수 없는 경우에 “ 면영업활동의 총 순이익 의합금: 차입이자, 기중감가상 각 비용” 의 계산 기준들은 2017/5/1일부터의 회계년도 잔여 개월수에 상응된 분배를 한다.

Contacts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 이전, 외국인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 정책,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 들어오셔서 검색해 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